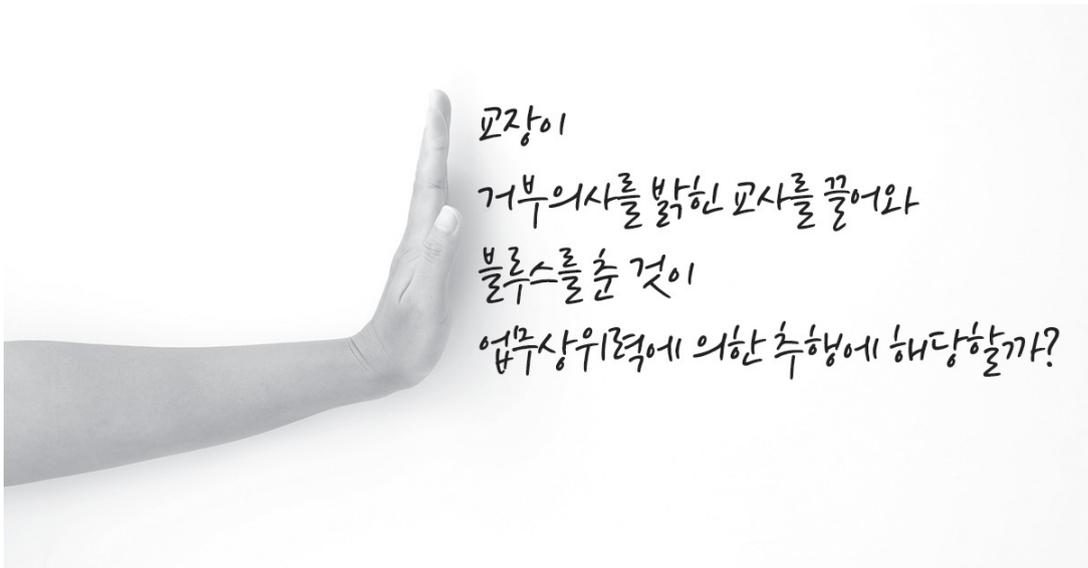


최신 판례

교장이 거부의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7도16443]



■ 사안의 내용 및 원심의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A 고등학교의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연수장소인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교사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계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한 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교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

에게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위 학교 교감을 통하여 A교사로부터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해당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

■ 하급심의 판단

- 1심 :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원심 : 피고인의 항소기각

■ 원심의 판단근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경위, 결국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함

● 직무유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학교장인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진상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판단됨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교장인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교사인 피해자를 잡아끌어 블루스를 춘 것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교내 강제추행사건 발생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함

■ 판결의 의의

-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유는?
[대법원 2017도16584]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유는?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위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하나였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로 매수함으로써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전산업개발(주), 대한철광(주)와 공동출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을 받은 피

고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투자를 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무죄
- 원심 : 검사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이유의 요지

-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고가매수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①경남기업이 납

입하지 못한 주주부담금 1,579만 달러를 대납하고, ② 위 대납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경남기업에 대하여 그 지분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었으며, ③ 그 후 강제지분조정으로 경남기업의 지분을 저가에 취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 1.5%를 기투자비 100%에 해당하는 고가로 매수한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함

-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② 그 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 문제제기를 무시하였으며, ③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국 ④ 위 재개발사업 투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함

■ **판결의 결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

■ **판단의 근거**

-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고가매수 배임 부분

원심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다른 컨소시엄 참여자들로서는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납할 필요성이 있었고, 경남기업이 상환기일까지 위 대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지분조정 대신 상환유예의 결정을 한 것은 강제지분조정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

며, 강제지분조정규정이 있었던 만큼 별도의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후 주주부담금 대납금을 모두 상환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 1.5%를 기투자비 100%에 매수한 것 역시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김영한 등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에 의해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사업참여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 문제제기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사업의 사업성을 부실하게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함
- 피고인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는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료/법원사람들)